

공 사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8. 5.

제천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6. 10:00 ~ 2026. 8. 12.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2. 11:00, 제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사위치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422-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0일(전체분 900일, 1차분 130일)				
공사내용	하수처리시설 증설 Q=100m ³ /일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별도)
4,099,700,000	2,510,700,000	2,282,454,545	228,245,455	1,589,000,000	

- 기초금액 : 금2,510,700,000원(1차분 204,600,000원)
- 현장 설명 : 생략(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 043-641-3542)]
- 설계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사업성격 상 공종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 관리가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차수분)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입찰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약속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8. 5.(수) ~ 2026. 8. 12.(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8. 6.(목) 10:00 ~ 2026. 8. 12.(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8. 12.(수) 11:00
개 찰 장 소	제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8. 12.(수) 15: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자체 확인- 별도 통보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천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 비율
종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282,454,545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은 176,827,907원**입니다. (본 공고 8번 경비의 합산 값)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마.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1,954,461,609원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7.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76,827,907	32,235,742	24,397,367	15,608,886	3,205,814	40,118,927	10,859,950	50,401,22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 바. 우리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아.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후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같은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설업 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해당하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및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라.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 업체(제천시 우선)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합니다.
- 1)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지역업체(**제천업체 우선**)참여
 - 2)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 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 3)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사용
-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사. 선순위자의 낙찰자 결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후 순위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 기타 공사와 관련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043-641-3542),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043-641-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제천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2 ~ 5065) 및 홈페이지(www.jechen.go.kr)내 OK민원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공사)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금 (금)	원정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3	조세 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예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예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별첨 1]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천시 회계 4400179-016241. 2024. 06. 17.)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제천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계약대상자는 인지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지역개발공채의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총공사 부기금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및 채권양도)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지급은 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천시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한다.

제6조(노임지급 및 압류금지대상)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율로 조정한다.

제8조(환경오염 방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 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관리 상태
5. 하도급에 관한사항
6. 기타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의 부존재를 해당 하수급인과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률이 100분의 8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가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 품질이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천시 소재 기업 및 우수중소기업 생산 자재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전일 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시민을 해당 공사 인력(기능공 포함)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천시 소재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제천시청렴계약제 준수 의무) 입찰 참가업체는 제천시 청렴계약제도를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제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일치 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 등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상호 인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부 칙<2024. 6. 17.>

이 특수조건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작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작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제천시 관급공사 시행에 따른 협약서(서약서)		
공 사 명		00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위 시설공사(용역)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협약(서약) 합니다.		
제1조(근거) 본 협약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의 제13장 제9절의 “7”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4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5조(선금지급) 선금급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금급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6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및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9조(사용자의 책무, 하수급인 포함)

-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 건설기계근로자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개설 (협약서-서식1,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 첨부)
- 기성검사.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청구내역서 제출-서식3
-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및 임대료 지급결과 통보-서식4
- 임금지급시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가 지급사실 게시
- 임금과 임대료 수령시 2일 이내 지급

제10조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제천시	환경사업소
계약상대자	:	성 명	0000 대표 000 (인)
		주 소	
		사업자번호	
하수급인	:	성 명	(인)
		주 소	
		사업자번호	

[붙임2-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인 경우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 1. 공 사 명 :
- 2. 계 약 상 대 자 :
- 3. 계 약 금 액 :
- 4.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 :

상기 공사에 대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아래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고, 이에 붙임의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동 제도 적용제외에 따른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금회 신고한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으며, 임금채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추후 상용근로자가 아닌 자를 당해공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의 노무자로 포함될 즉시 합의서를 제출하고,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참여 상용근로자 명부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붙임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20 . . .

계약상대자(또는, 하도급업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제천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2]

공사근로자 노무비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서(0월)		
1.	공 사 명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주)○○○○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제 천 시 장 귀하

[붙임2-3]

공사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건설기계 임대료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붙임2-4]

공사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건설기계 임대료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2012. 8. 10